

●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206호

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대한 평가 관련 성과보고서 작성방법과 세부 평가기준을 고시합니다.

2023년 04월 20일

국토교통부장관

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보고서 작성방법 및 평가기준 고시

1. 목적

○ 기지정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내실있는 시범운행지구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 마련

2. 시범운행지구 운영 평가 관련 성과보고서 작성과 세부 평가기준

○ 붙임 자료에 따름

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보고서 작성방법 및 평가기준

1. 근거 및 목적

□ 근거

○ 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7조 제4항

○ 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(이하 "령"이라 한다) 제14조 제5항

□ 목적

○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시·도지사)가 운영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성과보고서의 작성방법 및 세부적인 평가기준

을 정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

2. 용어의 정의

가. 평가업무대행기관(이하 "대행기관"이라 한다)

-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평가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

나. 평가대상 시·도지사

-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는 시·도지사

다.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평가단(이하 "평가단"이라 한다)

-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각 대행기관의 장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전담조직

3. 성과보고서 작성내용

-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성과보고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해야 함

1) 시범운행지구 개요

- 가) 명칭 및 위치·범위
- 나) 운영계획서에 제시한 서비스 개요

2)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달성도

- 가) 서비스 운영계획 이행도
- 나) 기반시설 구축계획 이행도 및 관리 실적
- 다) 재정적·제도적 지원 실적
- 라) 안전 관리 실적
- 마) 갈등 관리 실적

3)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규제특례에 따른 효과

- 가)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따른 도로 소통 및 도로 안전성 변화
- 나) 기존 산업에 미치는 영향

- 4)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·확산 및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계 발전에 미치는 효과
 - 가) 서비스별 이용수요(비운송형 서비스의 경우 운행횟수)
 - 나) 자율주행기술 향상도
 - 다) 시범운행지구 참여 기관의 기업 성장도

- 5) 차년도 운영계획 목표
 - 가) 서비스 운영계획 목표
 - 나) 기반시설 구축계획 목표
 - 다) 재정 지원계획 규모

○ 성과보고서는 평가대상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운영성과에 대해서 작성함. 다만, 전년도의 하반기에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의 성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음

○ 전년도의 하반기에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아 처음으로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성과보고서 작성대상 기간은 지정받은 시기부터 평가대상 연도 12월까지임

4. 운영성과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

가. 평가기준

○ 영 제14조 제5항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(평가부문·평가항목·평가지표 및 평가기준)은 [별표 1]과 같음

나. 평가부문·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가중치

○ 평가부문·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별 가중치는 [별표 2]와 같음

다. 평가방법

○ 평가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실시함

- 1) 서면평가는 평가대상 시·도지사가 작성·제출한 성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근거로 평가함
- 2) 평가대상 시·도지사가 제출한 성과보고서 및 증빙자료에 대한 확인·검증이 필요한 경우 당해 평가대상 시범운행지구를 방문하여 현지실사평가를 시행할 수 있음

라. 종합 평가점수의 산정

○ 종합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들의 평가부문 점수 총합을 평균한 값에서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에 따른 감점을 적용하여 산정함

- 일부지표의 평가가 제외되어 특정 평가부문의 배점이 줄어드는 경우 「별표2」에서 정한 해당 평가부문의 배점으로 환산하여 계산함

* (예시) II.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규제특례에 따른 효과 부문(20점)에서 ‘II-2. 규제특례 효과(7점)’ 지표의 평가가 제외되어 ‘II-1. 지구 지정 효과(13점)’ 만 평가되는 경우, 해당 부문의 총점은 기존 13점 배점에서 20점 배점으로 환산됨

- 산출된 종합 평가점수는 소숫점 첫 번째 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정수단위로 산정함

○ 평가부문·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점수는 다음 각 목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함

- 1) 평가부문별 점수는 각 평가항목 점수의 합
- 2) 평가항목별 점수는 각 평가지표 점수의 합
- 3) 평가지표별 점수는 평가 기준을 정량화한 값

○ 감점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음

- 1) 1건 이상 교통사고* 발생시 -5점 * 사고의 원인이 자율주행인 경우로 한함
- 2) 1건 이상 교통법규 위반 발생시 -2점

마. 종합 평가

○ 라목에서 산출한 종합 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함

- 1) A : 종합 평가 점수 90점 이상
- 2) B : 종합 평가 점수 80점 이상
- 3) C : 종합 평가 점수 70점 이상
- 4) D : 종합 평가 점수 60점 이상
- 5) E : 종합 평가 점수 60점 미만

바. 평가기간

○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평가기간은 성과보고서를 받은 해의 9월 30일까지로 하며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

5. 평가시 협조

○ 평가대상 시·도지사는 자료제출 등 평가단의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 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

○ 평가단은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시·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

- 1) 관계직원에 대한 질문 및 확인
- 2) 관련서류의 확인
- 3) 자율주행자동차 및 관련시설에 대한 현지실사평가를 통한 확인
- 4) 평가의 객관성 및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요구
- 5)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조치

6.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

○ 국토교통부는 법 제17조 제3항에 의거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평가대상 시·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함

○ 종합 평가 결과가 “A” 인 시범운영지구는 법 제23조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

○ 종합 평가 결과가 3년 연속 “E” 인 시범운영지구는 시범운영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

[별표1] 평가부문·평가항목·평가지표 및 평가기준

평가 부문	평가 항목	평가 지표	평가 기준
I. 시범운영지구 운영계획 달성도	I-1. 서비스 운영계획 이행도	I-1-1. 서비스 운영기간	○ 서비스 운영기간의 우수성

평가 부문		1-1-2. 월 평균 운행거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운영계획목표 달성의 우수성 ○ 목표 설정의 우수성 (운영계획서 상 목표 미설정시) 	
		1-1-3. 유상운송 대수 상한 대비 허가 대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상운송용 자율주행차 대수 상한 대비 허가 대수 비율의 우수성 	
		1-1-4. 운행거리 당 이용실적*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운영계획목표 달성의 우수성 - 운행거리 당 이용실적(인원 또는 건) 달성율 ○ 목표 설정의 우수성 (운영계획서 상 목표 미설정시) 	
	1-2. 기반시설 구축계획 이행도 및 관리 실적	1-2-1. 기반시설 구축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운영계획목표 대비 시설 구축 수준의 우수성 ○ 목표 설정의 우수성 (운영계획서 상 목표 미설정시) ※ 기반시설 예시 : 신호개방수(개), 정밀지도 연장(km), 안내표지판(개), 정류장(개), 노면표시(개), 자율차전용 주차구획(면), 충전시설(개), V2X 단말기, 관제센터, 기타 시스템 등 	
		1-2-2. 기반시설 관리 노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스템 운영·관리를 위한 노력 및 실적의 질적 우수성 ※ 시스템 예시 : 관제시스템, 서비스 제공시스템(앱), 인프라 연계 시스템(신호현시 및 보행자정보 제공시스템 등) ○ 시스템 외 기반시설 운영·관리를 위한 노력 및 실적의 질적 우수성 	
	1-3. 재정적· 제도적 지원 실적	1-3-1. 제도적 지원 실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련 조례 및 기타 지원 제도 마련, 또는 실효성 향상을 위한 노력/실적의 질적 우수성 	
		1-3-2. 재정지원 실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운영계획(목표) 기준 예산 집행 수준의 우수성 ○ 재정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적합성 	
	1-4. 안전관리 실적	1-4-1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예방 및 개선 노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예방 및 개선 노력의 적정성 - 사고 및 법규 준수를 위한 지구, 사업자의 예방 노력 - 사고 및 법규 위반 발생 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(발생한 경우) 	
		1-4-2 안전확보 및 향상 노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운영 계획서의 안전관리 운영 적정성 - 안전관리 매뉴얼 준수 여부 - 안전관리자 배치 및 교육 시행 여부 - 탑승객 비상상황 교육 시행 여부 	
		1-4-3 돌발상황 저감노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돌발상황(긴급제어상황) 개선 노력 - 급감속·급조향 및 운행장애 등 발생 상황에 대한 대응 적정성 	
	1-5. 갈등관리 실적*	1-5-1. 갈등관리 노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해관계자(주민, 기존 산업, 관계기관 등)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/실적의 우수성 ○ 갈등 발생시 대응 과정의 적정성 	
	II. 시범운영지구 지정 및 규제특례에 따른 효과 부문	II-1. 지구 지정 효과	II-1-1. 도로 소통상황 변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구 내 도로구간별 일반/자율차 통행량 및 통행속도 정보의 구체성 ○ 자율주행통행정도에 따른 도로교통 소통 변화 진단 결과의 합리성
			II-1-2. 도로안전성 변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구 내 도로구간별 사고 및 돌발상황 발생 정보의 구체성 ○ 자율주행통행수준에 따른 도로안전성 변화 진단 결과의 합리성

	II-2. 규제특례 효과 [‡]	II-2-1. 기존 산업에 미치는 영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쟁서비스* 산출 방법의 적합성 및 경쟁서비스 운영현황자료의 구체성 ○ 경쟁서비스*와 해당서비스의 월이용실적(인원 또는 건) 자료 및 증빙자료의 구체성 및 비교 분석 결과의 합리성 (비운송형 서비스의 경우 운행횟수 추이 비교 분석의 구체성)
III.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·확산 및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에 미치는 효과 부문	III-1.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·확산 효과	III-1-1. 도입·확산 정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비스별 월이용자수 추이 자료 제출 여부 (비운송형 서비스의 경우 운행거리 추이 자료 제출 여부)
	III-2.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계 발전 효과	III-2-1. 자율주행기술 향상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참여 기업의 자율차 기술 향상도 관련 자료 제출 여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누적 주행거리, 제어권 전환 및 고장 감소율 - 예정되지 않은 차선변경이나 경로이탈 발생률 ○ 자율주행 운행환경 개선 노력 관련 자료 제출 여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자체/업체의 자율차 운행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사항
		III-2-2. 참여기업의 기업성장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참여 기업의 기업 성장도 관련 자료 제출 여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참여 기업의 주요역할, 종사자수, 사업매출액, 투자유치액
IV. 차년도 운영계획 목표 평가 부문	IV-1. 서비스 운영계획 목표	IV-1-1. 서비스 운영계획 목표의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비스별 월평균 운행거리 목표 설정의 적정성 ○ 서비스별 운행거리 당 이용실적(인원 혹은 건) 목표 설정의 적정성* ○ 미운영서비스에 대한 운영계획의 적정성
	IV-2. 기반시설 구축계획 목표	IV-2-1. 기반시설 구축계획 목표의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반시설별 구축 목표 설정의 적정성
	IV-3. 재정지원 계획 목표	IV-3-1. 재정지원계획 목표의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및 지속성 ○ 재정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적합성

* 유상서비스에 대해서만 이용실적 평가. 이용실적이 없는 무상(운송실증 및 비운송실증)서비스는 평가대상에서 제외

** 경쟁서비스 : (노선형 여객운송사업) 노선버스, (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) 노선버스 및 택시, (구역형 여객운송사업) 택시, (화물운송사업) 택배사업 혹은 경쟁 사업, (기타 비운송사업) 기존 사업 혹은 경쟁 사업

† 기존 산업과의 갈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무상(운송실증 및 비운송실증)서비스만을 운영하는 경우, 해당 항목의 평가를 제외하고, 제4장라목의 종합 평가점수의 산정방법에 따라 최종 종합평가 점수를 산출

‡ 기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무상(운송실증 및 비운송실증)서비스는 평균에서 제외하며, 무상(운송실증 및 비운송실증)서비스만을 운영하는 시범운행지구의 경우 해당 항목의 평가를 제외하고, 제4장라목의 종합 평가점수의 산정방법에 따라 최종 종합평가 점수를 산출

주) 세부평가기준은 평가단의 의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[별표2] 평가부문·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별 가중치

평가 부문	배점	평가 항목	배점	평가 지표	배점
I. 시범운영지구 운영계획 달성도 평가 부문	60	I-1. 서비스 운영계획 이행도	20	I-1-1. 서비스 운영기간	5
				I-1-2. 월평균 운행거리	6
				I-1-3. 유상운송 대수 상한 대비 허가 대수	4
				I-1-4. 운행거리 당 이용실적*	5
		I-2. 기반시설 구축계획 이행도 및 관리 실적	10	I-2-1. 기반시설 구축률	4
				I-2-2. 기반시설 관리 노력	6
		I-3. 재정적·제도적 지원 실적	8	I-3-1. 제도적 지원 실적	4
				I-3-2. 재정지원 실적	4
		I-4. 안전관리 실적	15	I-4-1.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예방 및 개선 노력	5
				I-4-2. 안전확보 및 향상 노력	6
I-4-3. 돌발상황 저감노력	4				
I-5. 갈등관리 실적†	7	I-5-1. 갈등 관리 노력	7		
II. 시범운영지구 지정 및 규제특례에 따른 효과 부문	20	II-1. 지구 지정 효과	13	II-1-1. 도로 소통상황 변화	7
				II-1-2. 도로안전성 변화	6
		II-2. 규제특례 효과‡	7	II-2-1. 기존 산업에 미치는 영향	7
III.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·확산 및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에 미치는 효과 부문	10	III-1. 자율주행자동차 도입·확산 효과	4	III-1-1. 도입확산 정도	4
		III-2.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계 발전 효과	6	III-2-1. 자율주행기술 향상도	4
				III-2-2. 참여기관의 기업성장도	2
IV. 차년도 운영계획 목표 평가 부문	10	IV-1. 서비스 운영계획 목표	5	IV-1-1. 서비스 운영계획 목표의 적정성	5
		IV-2. 기반시설 구축계획 목표	3	IV-2-1. 기반시설 구축계획 목표의 적정성	3
		IV-3. 재정지원계획 목표	2	IV-3-1. 재정지원계획 목표의 적정성	2

* 유상서비스에 대해서만 평가. 이용실적이 없는 무상(운송실증 및 비운송실증)서비스는 평가대상에서 제외

† 기존 산업과의 갈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무상(운송실증 및 비운송실증)서비스만을 운영하는 경우, 해당 항목의 평가를 제외하고, 제4장라목의 종합 평가점수의 산정방법에 따라 최종 종합평가

점수를 산출

‡ 기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무상(운송실증 및 비운송실증)서비스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. 공공서비스만을 운영하는 시범운행지구의 경우 해당 항목의 평가를 제외하고, 제4 장라목의 종합 평가점수의 산정방법에 따라 최종 종합평가 점수를 산출

주) 평가배점은 평가단의 의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